

레이와 원년(2019년) 6월14일 공포 법률 제34호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게재된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

일본 민법(친족·상속) 한국어 번역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친족의 범위)

제725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친족으로 한다.

1호 6촌 이내의 혈족

2호 배우자

3호 3촌 이내의 인척

(촌수의 계산)

제726조 촌수는 친족 간의 세대 수를 계산하여 이를 정한다.

2 방계 친족의 촌수를 정함에는 그 1인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동일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조상으로부터 다른 1인에 내려가기까지의 세대수에 의한다.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 발생)

제727조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과의 사이는 양자 입양의 날부터 혈족 간에 있어서와 동일한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제728조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해 종료한다.

2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인척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파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종료)

제729조 양자 및 그 배우자, 양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양부모 및 그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종료한다.

(친족 간의 부양)

제730조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은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

제2장 혼인

제1절 혼인의 성립

제1관 혼인의 요건

(혼인적령)

제731조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

(중혼의 금지)

제732조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할 수 없다.

(재혼금지기간)

제733조 여자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여자가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 시에 임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호 여자가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 후에 출산한 경우

(근친혼의 금지)

제734조 직계혈족 또는 3촌내 방계혈족 간에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와 입양가의 방계혈족과의 사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81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전항과 같다.

(직계인척간의 혼인의 금지)

제735조 직계인척 간에는 혼인을 할 수 없다. 제728조 또는 81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인척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같다.

(양친자 등 간의 혼인의 금지)

제736조 양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양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와 양부모 또는 그 직계존속과의 간에는 제72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혼인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혼인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의)

제737조 미성년의 자가 혼인을 함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부모의 일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로도 족하다. 부모의 일방이 알지 못한 때, 사망한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다.

(성년피후견인의 혼인)

제738조 성년피후견인이 혼인을 함에는 그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혼인신고)

제739조 혼인은 호적법(쇼와22년 법률 제224호)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2인 이상이 서명한 서면으로 또는 이 자(者)들로부터 구두로 하여야 한다.

(혼인 신고의 수리)

제740조 혼인 신고는 그 혼인이 제731조부터 제736조까지 및 전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혼인의 방식)

제741조 외국에 소재한 일본인 간의 혼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혼인의 무효)

제742조 혼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호 착오 기타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할 의사가 없는 때

2호 당사자가 혼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신청이 제739조 제2항에 정한 방식을 흠결한 때에는 혼인은 그 때문에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혼인의 취소)

제743조 혼인은 다음 조부터 제74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다.

(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제744조 제731조부터 제7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각 당사자, 그 친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2 제732조 또는 제733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적령자의 혼인의 취소)

제745조 제73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부적령(不適齡)자가 적령에 달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적령(不適齡)자는 적령에 도달한 후, 또한 3개월간은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령에 달한 후에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혼금지 기간 내에 한 혼인의 취소)

제746조 제733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일 부터 기산하여 100일이 경과하거나 여자가 재혼 후에 출산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제747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한 자는 그 혼인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권은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하거나 강박을 면한 후 3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소멸한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

제748조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혼인에 그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당사자가 혼인에 의하여 재산을 얻은 때에는 현재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에 있어서 그 반환을 하여야 한다.

3 혼인에 그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던 당사자는 혼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였던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혼의 규정의 준용)

제749조 제728 제1항, 제766조부터 제769조까지, 제790조 제1항 단서 및 제890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2절 혼인의 효력

(부부의 성)

제750조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성을 칭한다.

(생존배우자의 성 복귀 등)

제751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전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2 제769조의 규정은 전항 및 제728조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동거, 협력 및 부조의 의무)

제752조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여야 한다.

제753조 삭제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권)

제754조 부부 간에 한 계약은 혼인 중, 언제라도, 부부의 일방으로부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절 부부재산제

제1관 총칙

(부부의 재산관계)

제755조 부부가 혼인의 신고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다음 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부부재산계약의 대항요건)

제756조 부부가 법정재산제와 다른 계약을 한 때에는 혼인의 신고까지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57조 삭제

(부부의 재산관계의 변경의 제한 등)

제758조 부부의 재산관계는 혼인의 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가 부당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스스로 그 관리를 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재산은 전항의 청구와 함께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의 분할의 대항요건)

제759조 전조의 규정 또는 제755조의 계약의 결과에 의해, 재산의 관리자를 변

경하거나 공유재산의 분할을 한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2관 법정재산제

(혼인비용의 부담)

제760조 부부는 그 자산, 수입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으로부터 생기는 비용을 부담한다.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761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있어서,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 간에 있어서 재산의 귀속)

제762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는 재산 및 혼인 중에 자기의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단독으로 가지는 재산을 말한다.)으로 한다.

2 부부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4절 이혼

제1관 협의상의 이혼

(협의상 이혼)

제763조 부부는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다.

(혼인 규정의 준용)

제764조 제738조, 제739조 및 제747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이혼 신고의 수리)

제765조 이혼의 신고는 그 이혼이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819조 제1항의 규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2 이혼의 신청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리된 때에도 이혼은 그로 인해 효력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혼 후의 자의 감호에 관한 사항의 정함 등)

제766조 부모가 협의상의 이혼을 할 때에는 자의 감호를 할 자, 부 또는 모와 자와의 면회 및 그 밖의 교류, 자의 감호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 그 밖의 자의 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가 동향의 사항을 정한다.

3 가정재판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을 변경하고 그 밖의 자의 감호에 있어서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감호의 범위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에 의한 성(氏)의 회복 등)

제767조 혼인에 의하여 성을 바꾼 부 또는 처는 협의상의 이혼에 의하여 혼인전의 성으로 복귀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 전의 성으로 복귀한 부 또는 처는 이혼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신청으로 이혼 시에 칭하였던 성을 칭할 수 있다.

(재산분할)

제768조 협의상 이혼을 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분할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협의를 갈음하는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당사자 쌍방이 그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액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 및 분할액 및 방법을 정한다.

(이혼에 의한 성의 복귀 시의 권리의 승계)

제769조 이혼에 의하여 성을 고친 부 또는 처가 제897조 제1항의 권리를 승계한 후, 협의상 이혼을 한 때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협의로 그 권리를 승계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항의 권리를 승계할 자는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제2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제77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는 때

2호 배우자로부터 악의로 유기된 때

3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호 배우자가 중증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는 때

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재판소는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의 규정의 준용)

제771조 제766조부터 제769조까지의 규정은 재판상의 이혼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3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

(적출의 추정)

제772조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2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또는 혼인의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를 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제773조 제7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을 한 여자가 출산한 경우에,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적출의 부인)

제774조 제772조의 경우, 부는 자가 적출인 것을 부인할 수 있다.

(적출부인의 소)

제77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인권은 자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모에 대하여 적출부인의 소에 의하여 행한다. 친권을 행하는 모가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적출의 승인)

제776조 부는 자의 출생 후 적출인 것을 승인한 때에는 그 부인권을 잃는다.

(적출 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제777조 적출부인의 소는 부가 자의 출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78조 부가 성년피후견인인 때에는 전조의 기간은 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가 있었던 후 부가 자의 출생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

(인지)

제779조 적출이 아닌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인지능력)

제780조 인지를 함에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인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인지의 방식)

제781조 인지는 호적법의 정함에 따라 신청으로 한다.

2 인지는 유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성년인 자의 인지)

제782조 성년인 자는 그 승낙이 없으면 인지할 수 없다.

(태아 또는 사망한 자의 인지)

제783조 부는 태내에 존재하는 자도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부 또는 모는 사망한 자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직계비속이 성년자인 때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인지의 효력)

제784조 인지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인지 취소의 금지)

제785조 인지를 한 부 또는 모는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인지에 대한 반대의 사실의 주장)

제786조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하여 반대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인지의 소)

제787조 자, 그 직계비속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인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 또는 모의 사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지 후의 자의 감호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제788조 제766조의 규정은 부가 인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정)

제789조 부가 인지한 자는 그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2 혼인중 부모가 인지한 자는 그 인지 시로부터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자의 성)

제790조 적출인 자는 부모의 성을 칭한다. 그러나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 시에 있어서 부모의 성을 칭한다.

2 적출이 아닌 자는 모의 성을 칭한다.

(자의 성의 변경)

제791조 자가 부 또는 모와 성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호적법에 정함에 따라 신청으로 부 또는 모의 성을 칭할 수 있다.

2 부 또는 모가 성을 바꿈에 따라 자가 부모와 성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자는 부모의 혼인 중에 한하여, 전항의 허가를 얻지 않고, 호적법의 정함에 따라 신청으로 부모의 성을 칭할 수 있다.

3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전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을 바꾼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호적법의 정함에 따라 신청으로 종전의 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제792조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것의 금지)

제793조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할 수 없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4조 후견인이 피후견인 (미성년 피후견인 및 성년 피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양자로 하는 것은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 또한 그 관리의 계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이에도 이와 같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5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함에는 배우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적출인 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우자가 있는 자의 입양)

제796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함에는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입을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7조 양자가 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승낙을 함에는 양자가 될 자의 부모로서 감호를 해야 하는 자가 달리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자가 되는 자의 부모가 친권이 정지되어 있는 때에도 같다.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제798조 미성년자를 양자로 함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양자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 규정의 준용)

제799조 제738조 및 제739조의 규정은 입양에 준용한다.

(입양의 신청의 수리)

제800조 입양의 신청은 그 입양이 제79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외국에 존재하는 일본인 간의 입양의 방식)

제801조 외국에 존재하는 외국인 간의 입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799조에서 준용하는 제739조의 규정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입양의 무효 및 취소

(입양의 무효)

제802조 입양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호 사람의 착오 기타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입양을 할 의사가 없는 때

2호 당사자가 입양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신청이 제799조가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에 정한 방식을 흠결한 것인 때에는 입양은 그로 인해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입양의 취소)

제803조 입양은 다음 조부터 제80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입양의 취소)

제804조 제79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부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부모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의 입양의 취소)

제805조 제7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각 당사자 또는 그 친족이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제806조 제79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 또는 그 친가 쪽의 친족이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산이 종료한 후 양자가 추인을 하거나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단서의 추인은 양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양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한 사이에, 관리의 계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기간은 양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행위능력을 회복한 때부터 기산한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제806조의2 제7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입양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입양을 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제796조의 동의를 한 자는 그 입양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사기를 발견하거나 강박을 면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의 감호를 할 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제806조의3 제79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입양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가 추인을 하거나 양자가 15세에 달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제797조 제2항의 동의를 한 자에 준용한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제807조 제7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 그 친가 쪽의 친족 또는 양자를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자가 그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6개월을 경과하거나 추인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의 취소 등의 규정의 준용)

제808조 제747조 및 제748조의 규정은 입양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47조 제2항 중 "3개월"은 "6개월"로 한다.

2 제769조 및 제816조의 규정은 입양의 취소에 준용한다.

제3관 입양의 효력

(적출자의 신분의 취득)

제809조 양자는 입양의 날로부터 양부모의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양자의 성)

제810조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칭한다. 그러나 혼인에 의하여 성을 바꾼 자는 혼인 시에 정한 성을 칭해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파양

(협의상 파양 등)

제811조 입양의 당사자는 그 협의로 파양 할 수 있다.

2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파양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 될 자와 협의로 이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부모가 이혼했을 때에는 협의로 일방을 양자의 파양후에 친권자가 될 자로 정하여야 한다.

4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같은 항의 부 또는 모 또는 양부모의 청구에 의해,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5 제2항의 법정대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양자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자의 파양 후에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를 선임한다.

6 입양의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당사자가 파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부부인 양부모와 미성년자와의 파양)

제811조의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 미성년자와 파양을 함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 규정의 준용)

제812조 제738조, 제739조 및 제747조의 규정은 협의상의 파양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중 "3개월"은 "6개월"로 한다.

(파양 신청의 수리)

제813조 파양의 신청은 그 파양이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739조 제2항의 규정 및 제811조 및 제811조의2의 규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수리할 수 없다.

2 파양의 신청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리된 때에도 파양은 그로 인해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재판상 파양)

제814조 입양의 당사자의 일방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호 다른 일방으로부터 악의로 유기된 때

2호 다른 일방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아니한 때

3호 기타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제770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준용한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의 파양의 소의 당사자)

제815조 양자가 15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11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와 파양의 협의할 수 있는 자가 또는 이 자에 대하여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양에 의한 성 복귀 등)

제816조 양자는 파양에 의하여 입양 전의 성을 회복한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양자를 한 양부모의 일방과만 파양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입양의 날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 전의 성을 회복한 자는 파양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시에 칭하고 있던 성을 칭할 수 있다.

(파양에 의한 성의 회복 시의 권리의 승계)

제817조 제769조의 규정은 파양에 준용한다.

제5관 특별양자

(특별양자 입양의 성립)

제817조의2 가정재판소는 다음 조부터 제817조의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이 있는 때에는 양부모가 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가 쪽의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입양 (이하 이 관에 있어서 "특별양자입양"이라 한다)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함에는 제794조 또는 제798조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제817조의3 양부모가 될 자는 배우자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이 양부모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적출인 자 (특별양자입양 이외의 입양에 의한 양자를 제외한다.)의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제817조의4 2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양부모가 되는 부부의 일방이 25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자가 20세에 달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자가 되는 자의 연령)

제817조의5 제817조의2에 규정하는 청구 시에 15세에 달하고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특별양자입양이 성립할 때까지 18세에 달한 자에 대해서도 같다.

2 전항 전단의 규정은, 양자가 되는 사람이 15세에 달하기 전부터 계속 양부모가 되는 사람에게 감호되고 있는 경우, 15세에 달할 때까지 제8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양자가 되는 자가 15세에 달한 경우에는 특별양자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제817조의6 특별양자입양의 성립에는 양자가 되는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에 의하여 학대, 악의의 유기 그 밖의 양자가 될 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제817조의7 특별양자입양은 부모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의 감호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한다.

(감호의 상황)

제817조의8 특별양자입양을 성립하게 함에는 양부모가 될 자가 양자가 될 자를 6개월 이상의 기간 감호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제817조의2에 규정하는 청구 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그 청구 전의 감호 상황이 분명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가와외의 친족관계의 종료)

제817조의9 양자와 친가의 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특별양자입양에 의하여 종료한다. 그러나 제817조의3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다른 일방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양자입양의 파양)

제817조의10 다음 각 호의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양자, 친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양자입양의 당사자를 파양시킬 수 있다.

1호 양부모에 의하여 학대, 악의의 유기 그 밖의 양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가 있을 것

2호 실부모가 상당한 감호를 할 수 있을 것

2 파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이를 할 수 없다.

(파양에 따른 친가와외의 친족관계 회복)

제817조의11 양자와 친부모 및 그 혈족간에는 파양일로부터 특별양자입양에 의하여 종료된 친족관계와 동일한 친족관계를 생성한다.

제4장 친권

제1절 총칙

(친권자)

제818조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속한다.

2 자가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속한다.

3 친권은 부모의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의 친권자)

제819조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때에는 협의로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2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다.

3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은 모가 행사한다. 그러나 자의 출생 후에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할 수 있다.

4 부가 인지한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부를 친권자로 정한 때에 한하여 부가 행사한다.

5 제1항, 제3항 또는 전항의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협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6 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친권의 효력

(감호 및 교육의 권리의무)

제820조 친권자는 자의 이익을 위해 자의 감호 및 교육을 할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거소의 지정)

제821조 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그 거소를 정하여야 한다.

(징계)

제822조 친권자는 제820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를 징계할 수 있다.

(직업의 허가)

제823조 자는 친권자의 허가 없이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다.

2 친권자는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재산의 관리 및 대표)

제824조 친권자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발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일방이 공동의 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825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부모의 일방이 공동의 명의로 자에 갈음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가 이를 할 것에 동의한 때에는 그 행위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한 때에도 그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였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상반행위)

제826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와 그 자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는 친권자는 그 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친권자가 수인의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일인과 다른 자와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는 친권자는 그 일방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의무)

제827조 친권자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의 계산)

제828조 자가 성년에 달한 때에는 친권자는 지체 없이 그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자의 양육 및 재산의 관리의 비용은 그 자의 재산의 수익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829조 전조 단서의 규정은 무상으로 자에 재산을 준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 준 재산의 관리)

제830조 무상으로 자에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에 이를 관리하게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은 부 또는 모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재산에 대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3자가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리자를 선임한다.

3 제3자가 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도, 그 관리자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이를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가 다시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임규정의 준용)

제831조 제654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친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및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생긴 친자간 채권의 소멸시효)

제832조 친권자와 그 자 간의 재산의 관리로 생긴 채권은 그 관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자가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 자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자에 갈음하는 친권의 행사)

제833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복속하는 자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한다.

제3절 친권의 상실

(친권상실의 심판)

제834조 부 또는 모에 의하여 학대 또는 악의의 유기가 있는 때 그 밖에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그 원인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정지의 심판)

제834조의2 부 또는 모에 의한 친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 친권정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친권정지의 심판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소멸하기까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 자의 심신상태 및 생활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정지하는 기간을 정한다.

(관리권상실의 심판)

제835조 부 또는 모에 의한 관리권의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자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자,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관리권상실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의 심판의 취소)

제836조 제834조 본문, 제834조의2 제1항 또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각각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의 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제837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친권 또는 관리권을 사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부 또는 모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친권 또는 관리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후견

제1절 후견의 개시

제838조 후견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1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는 때 또는 친권자가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때

2호 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때

제2절 후견의 기관

제1관 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제839조 미성년자에 대한 최후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이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을 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84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미성년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흠결된 때에도 같다.

2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피후견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및 생활과 재산상황,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자의 직업 및 경력과 미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미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미성년피후견인의 의견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의 청구)

제841조 부 또는 모가 친권 또는 관리권을 사임하거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친권 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의 심판이 있어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부 또는 모는 지체 없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42조 삭제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843조 가정재판소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을 선임한다.

2 성년후견인이 흠결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성년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을 선임함에는 성년피후견인의 심신의 상태 및 생활과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 및 경력과 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후견인이 될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성년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성년피후견인의 의견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견인의 사임)

제844조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한 후견인에 의한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제845조 후견인이 그 임무를 사임함에 의하여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후견인은 지체 없이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인의 해임)

제846조 후견인에게 부정한 행위, 현저히 나쁜 행적 기타 후견의 임무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또는 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847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호 미성년자

2호 가정재판소에서 면직된 법정대리인, 보좌인 또는 보조인

3호 파산자

4호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거나 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호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제2관 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848조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선임)

제849조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후견인, 그의 친족 또는 후

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850조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후견감독인의 직무)

제851조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호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

2호 후견인이 흠결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

3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4호 후견인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와 피후견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것

(위임 및 후견인의 규정의 준용)

제852조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제840조 제3항 및 제857조의2의 규정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제843조 제4항, 제859조의2 및 제859조의3의 규정은 성년후견감독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3절 후견의 사무

(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제853조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의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를 마치고 또한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한은 가정재판소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다.

2 재산의 조사 및 그 목록의 작성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입회하에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재산 목록 작성전의 권한)

제854조 후견인은 재산의 목록의 작성을 마칠 때까지는 급박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신고의무)

제855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채무를 지는 경우에,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후견감독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을 상실한다.

(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준용)

제856조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이 취득한 후 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의 감호에 관한 권리의무)

제857조 미성년후견인은 제820조부터 제823조까지에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육의 방법 및 거소의 변경, 영업의 허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이를 제한하는 것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제857조의2 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그 일부의 자에게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재산에 관한 권한에 있

어 각 미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또는 수인의 미성년후견인이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전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족하다.

(성년피후견인의 의사의 존중 및 신상의 배려)

제858조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의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성년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그 심신상태 및 생활 상황을 배려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 및 대표)

제85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피후견인을 대표한다.

2 제824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제859조의2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직권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족하다.

(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의 허가)

제859조의3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또는 그 부지에 매각, 임대, 임대차의 해제 또는 저당권의 설정 그 밖의 이들

에 준하는 처분을 함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익상반행위)

제860조 제826조의 규정은 후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의 사무의 비용)

제861조 후견인은 그 취임의 개시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생활, 교육 또는 요양간호 및 재산의 관리를 위해 매년 지출할 금액을 예정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이 후견의 사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불한다.

(후견인의 보수)

제862조 가정재판소는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자력 기타 사정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다.

(후견 사무의 감독)

제863조 후견감독인 또는 가정재판소는 언제라도 후견인에 대하여 후견의 사무의 보고 또는 재산의 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후견의 사무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가정재판소는 후견감독인, 피견인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기타 후견의 사무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제864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신하여 영업 또는 제13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

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피후견인이 이를 함에 동의함에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항 제1호에 열거한 원본의 수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5조 후견인이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의를 얻은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의 취소)

제866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때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미성년피후견인에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제867조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피후견인에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한다.

2 제853조부터 제857조까지 및 제861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

제868조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다.

(위임 및 친권 규정의 준용)

제869조 제644조 및 제830조의 규정은 후견에 준용한다.

제4절 후견의 종료

(후견의 계산)

제870조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그 관리의 계산(이하, ‘후견의 계산’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가정재판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71조 후견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피후견인 등과의 계약 등의 취소)

제872조 미성년피후견인이 성년에 달한 후, 후견의 계산의 종료 전에 그 자와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 사이에 한 계약은 그 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 자가 미성년후견인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단독행위도 이와 같다.

2 제20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

제873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반환할 금액 및 피후견인이 후견인에 반환할 금액에는 후견의 계산이 종료한 때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2 후견인은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 시로부터 이에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아직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873조의2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성년피후견인의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때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상속재산에 속하는 특정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2호 상속재산에 속하는 채무(변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함)의 변제

3호 시체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기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22호에 열거된 행위 제외)

(위임 규정의 준용)

제874조 제654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후견에 준용한다.

(후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제875조 제832조의 규정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과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후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한다.

2 전항의 소멸시효는 제8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시로부터 기산한다.

제6장 보좌 및 보조

제1절 보좌

(보좌의 개시)

제876조 보좌는 보좌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한다.

(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제876조의2 가정재판소는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좌인을 선임한다.

2 제8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44조부터 제847조까지의 규정은 보좌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3 보좌인 및 그를 대표하는 자와 피보좌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는 보좌인

은 임시보좌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좌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좌감독인)

제876조의3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보좌인, 그 친족 또는 보좌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좌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3조 제4항,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보좌감독인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51조 제4호 중 “피후견인을 대표하는”은 “피보좌인을 대표하거나 피보좌인이 이를 할 것에 동의하는”으로 한다.

(보좌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제876조의4 가정재판소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좌인을 위해 특정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보좌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가정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해, 동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좌의 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876조의5 보좌인은 보좌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보좌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그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한다.

2 제644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제862조 및 제863조의 규정은 보좌의 사무에 있어서, 제824조 단서의 규정은 보좌인이 전조 제1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에 기하여 피보좌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

한다.

3 제654조, 제655조, 제870조, 제871조 및 제873조의 규정은 보좌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제832조의 규정은 보좌인 또는 보좌감독인과 피보좌인과의 사이에 있어서 보좌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2절 보조

(보조의 개시)

제876조의6 보조는 보조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한다.

(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제876조의7 가정재판소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임한다.

2 제84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44조부터 제847조까지의 규정은 보조인에 준용한다.

3 보조인 또는 그 대표하는 자와 피보조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보조인은 임시보조인의 선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조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감독인)

제876조의8 가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보조인, 그 친족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보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제644조, 제654조, 제655조, 제843조 제4항,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및 제862조의 규정은 보조감독인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51조 제4호 중 "피후견인을 대표하는"은 "피보조인을 대표하거나 피보조인이 이를 할 것에 동의하는"으로 한다.

(보조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

제876조의9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피보조인을 위해 특정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보조인에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2 제876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있어서 준용한다.

(보조의 사무 및 보조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876조의10 제644조, 제859조의2, 제859조의3, 제861조 제2항, 제862조, 제863조 및 제876조의5 제1항의 규정은 보조의 사무에 있어서, 제824조 단서의 규정은 보조인이 전조 제1항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심판에 기하여 피보조인을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2 제654조, 제655조, 제870조, 제871조 및 제873조의 규정은 보조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있어서, 제832조의 규정은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과 피보조인과의 사이에 보조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7장 부양

(부양의무자)

제877조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상호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

2 가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3촌 등 내의 친족 간에 있어서도 부양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은 후 사정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부양의 순위)

제878조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 할 자의 순위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격이 그 전원을 부양하기에 족하지 아니한 때의 부양을 받을 자의 순서에 있어서도 같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제879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양권리자의 수요,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재판소가 이를 정한다.

(부양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제880조 부양 할 자 또는 부양 받아야 할 자의 순위 또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대한 협의 또는 심판이 있을 후 사정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부양청구권의 처분의 금지)

제881조 부양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제5편 상속

제1장 총칙

(상속개시의 원인)

제882조 상속은 사망에 의하여 개시한다.

(상속개시의 장소)

제883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에서 개시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제884조 상속회복의 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제885조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상속인

(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제886조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규정은 태아가 사망한 채로 태어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제887조 피상속인의 자는 상속인이 된다.

2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때 또한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¹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그 자의 자가 이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 일정(一定)한 법정원인(法定原因)에 의거(依據)하여 또는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청구(請求)에 의(依)하여 추정(推定) 호주(戶主) 상속인(相續人) 또는 추정(推定) 유산상속인(遺產相續人)의 자격(資格)을 법원(法院)의 판결(判決)에 의하여 상실(喪失)하게 하는 일(네이버 한자사전 발췌)

3 전항의 규정은 대습자가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에 의하여 그 대습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888조 삭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제889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제8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순서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러나 촌수가 다른 자 사이에서는 그 촌수가 가까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2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 제887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배우자의 상속권)

제89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88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와 동순위가 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891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호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에 있어서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이르게 하려고 함으로써 형벌을 받은 자

2호 피상속인이 살해된 것을 알고,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그 자에 시비의 변별이 없는 때 또는 살해자가 자기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하거나

나,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또는 변경하게 한 자

5호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추정상속인의 폐제)

제892조 유류분을 가진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게 학대를 하거나 그에게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기타 현저한 비행이 있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제893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추정상속인을 폐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지체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

제894조 피상속인은 언제라도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전조의 규정은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에 있어서 준용한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확정 전의 유산의 관리)

제895조 추정상속인의 폐제 또는 그 취소의 청구가 있을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유언이

있던 때에도 이와 같다.

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유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제3장 상속의 효력

제1절 총칙

(상속의 일반적 효력)

제896조 상속인은 상속개시의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제897조 계보, 제구 및 분묘의 소유권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습에 좇아 조상의 제사를 주재할 자가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지정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할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승계한다.

2 전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관습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항의 권리를 승계할 자는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공동상속의 효력)

제898조 상속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에 속한다.

제899조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에 있어서의 권리승계의 대항요건)

제899조의2 상속에 의한 권리의 승계는 유산의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조 및 제90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서는 등기, 등록 및 그 밖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항의 권리가 채권인 경우, 다음 조 및 제90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해당 채권을 승계한 공동상속인이 해당 채권과 관련된 유언의 내용(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해당 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과 관련된 유산의 분할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채무자에게 그 승계통지를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상속분

(법정상속분)

제900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음 각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

1호 자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는 자의 상속분 및 배우자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2호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3분의2로 하고, 직계존속의 상속분은 3분의1로 한다.

3호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4분의3으로 하고,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

4호 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는 때에는 각자의 상속분은 서로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의 쌍방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1로 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제901조 제88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그 직계존속이 받아야 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여럿 있는 때에는 그 각자의 직계존속이 받아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속분을 정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8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제902조 피상속인은 전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의 상속분만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정하게 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상속분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제902조의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채무의 채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이 지정된 경우에도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제900조 및 제90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대하여 그 지정된 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90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 또는 양자입장을 위해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의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유증 또는 증여의 가액이 상속분의 가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수유증

자 또는 수증자는 그 상속분을 받을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전2항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4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일방인 피상속인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그 부지에 대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한 때에는 해당 피상속인은 그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04조 전조의 규정하는 증여의 가액은 수증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목적인 재산이 멸실 또는 그 가격의 증감이 있던 때에도 상속개시의 시에 있어서 여전히 원상태대로의 것으로 보고 이를 정한다.

(기여분)

제904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있어서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가지고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기여를 한 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금액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3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의 청구는 제9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던 경우 또는 제910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속분의 환취권)

제905조 공동상속인의 1인이 유산의 분할 전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 양도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 및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는 1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절 유산의 분할

(유산분할의 기준)

제906조 유산의 분할은 유산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한다.

(유산분할 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유산의 범위)

제906조의2 유산의 분할 전에 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처분된 재산이 유산의 분할 시에 유산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같은 항의 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산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제907조 공동상속인은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그 협의로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할 수 있다.

2 유산의 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분할을 가정재판

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산의 일부를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의 분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 본문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유산분할의 방법의 지정 및 유산분할의 금지)

제908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 위탁하거나 상속개시 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유산분할의 효력)

제909조 유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의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

(유산분할 전 예저금 채권의 행사)

제902조의2 각 공동상속인은 유산에 속하는 예저금채권 중 상속개시 시 채권액의 3분의1에 제900조 및 제90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한 금액(표준적인 당장의 필요생계비, 평균적인 장례비용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예저금채권의 채무자별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한 예저금채권에 관해서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유산의 일부의 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 지급청구권)

제910조 상속개시후 인지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유산의 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가액만에

따른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공동상속인 간의 담보책임)

제911조 각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하게 그 상속분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유산분할에 의하여 수령한 채권에 대한 담보책임)

제912조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받은 채권에 대하여 그 분할 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 및 정지조건부 채권에 있어서는 각 공동상속인은 변제를 할 때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913조 담보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을 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할 수 없는 부분은 구상자 및 다른 자력을 가진 자가 각각 그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자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

(유언에 의한 담보책임의 규정)

제914조 전3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절 총칙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

제915조 상속인은 자기를 위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에 있어서 단순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재판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916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자의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917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인 때에는 제915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을 위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

(상속재산의 관리)

제918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제919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제915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철회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편(총칙) 및 전편(친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전항의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가정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제2절 상속의 승인

제1관 단순승인

(단순승인의 효력)

제920조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무한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정단순승인)

제921조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 그러나 보존행위 및 제 60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를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호 상속인이 제915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한 후에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 사적으로 이를 소비, 또는 악의로 이를 상속재산의 목록 중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그러나 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의 승인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한정승인

(한정승인)

제922조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여 상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923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이를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방식)

제924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15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재판소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을 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제925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그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제926조 한정승인자는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9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제927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상속채권자(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유자(受遺者)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 및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청구를 신청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하로 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에서 제척된다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를 제척할 수 없다.

3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는 각각 별도로 그 신청을 최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공고기간 만료 전의 변제의 거절)

제928조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제929조 제927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같은 항의 신청을 한 상속채권자 그 밖에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기한 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930조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이더라도,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2 조건부의 채권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수유자에 대한 변제)

제931조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가 아니면, 수유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다.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제932조 전3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이를 경매에 붙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액을 변제하여 그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절차에의 참가)

제933조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상속재산의 경매 또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6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제934조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의 공고 또는 최고할 것을 해태하거나 동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29조부터 제93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때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은 사정을 알고 부당하게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대한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구상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724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제935조 제92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잔여재산에 있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특별담보를 가진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제936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인을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다.

3 제926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있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27조 제1항 중 "한정승인을 한 후 5일 이내"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 선임이 있은 후 10일 이내"로 한다.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제937조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에 있어서 제921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채권액에 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절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의 방식)

제938조 상속의 포기를 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가정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효력)

제939조 상속의 포기를 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포기를 한 자에 의한 관리)

제940조 상속의 포기를 한 자는 그 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9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재산분리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제941조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을 분리할 것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이와 같다.

2 가정재판소가 전항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5일 이내에 다른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것 및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당가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하로 할 수 없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

(재산분리의 효력)

제942조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입을 신청한 자는 상속재산에 있어서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재산분리의 청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943조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재산분리의 청구 후의 상속인에 의한 관리)

제944조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후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45조부터 제647조까지 및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945조 재산분리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물상대위의 규정의 준용)

제946조 제304조의 규정은 재산분리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제947조 상속인은 제9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재산분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제941조제2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배당가입을 신청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3 제930조부터 제934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948조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 및 배당가입을 신청한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분리 청구의 방지 등)

제949조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을 가지고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변제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재산분리의 청구를 방지하거나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것을 증명하고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제950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혼합되지 아니한 사이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304조, 제925조, 제927조부터 제934조까지, 제943조부터 제945조까지 및 제94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927조의 공고 및 최고는 재산분리를 청구 한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재산법인의 성립)

제951조 상속인인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법인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선임)

제952조 전조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재자 재산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53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간단히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보고)

제954조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에 상속재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제955조 상속인인 것이 명확하게 된 때에는 제951조의 법인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제956조 상속재산의 관리인의 대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계를 한 때에 소멸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제957조 제952조제2항의 공고가 있을 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지체 없이 모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는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제9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28조부터 제935조까지(제932조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상속인의 수색의 공고)

제958조 전조 제1항의 기간의 만료 후, 또한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하는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958조의2 전조의 기간 내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익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할)

제958조의3 전조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자 그 밖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이들에게 청산 후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여할 수 있다.

(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

제959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제9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유언

제1절 총칙

(유언의 방식)

제960조 유언은 이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유언능력)

제961조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제96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유언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3조 유언자는 유언을 할 때에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제964조 유언자는 포괄 또는 특정의 명의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5조 제886조 및 제891조의 규정은 수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피후견인의 유언의 제한)

제966조 피후견인이 후견의 계산의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이익이 되는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관 보통 방식

(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제967조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방식에 의할 것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필증서유언)

제968조 자필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함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자필증서에 이와 일체로 상속재산(제997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의 동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대해서는 자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유언자는 그 목록의 매 장(자서하지 아니한 기재가 그 양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양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자필증서(전항의 목록을 포함) 중의 가제(加除), 기타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한 사실을 부기하여 특히 이에 서명하고 그 변경의 장소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공정증서유언)

제969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1호 증인 2인 이상의 입회가 있을 것

2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술할 것

3호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할 것

4호 유언자 및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 그러나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

5호 공증인이 그 증서에 전 각호에 열거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의 특칙)

제969조의2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진술하거나 자서해서 전조 제2호의 구술에 대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같은 호 중 "구술"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한 진술 또는 자서"로 한다.

2 전조의 유언자 또는 증인이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유언자 또는 증인에게 전하여 같은 호의 읽어주기를 대신할 수 있다.

3 공증인은 전2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증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유언)

제970조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함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1호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2호 유언자가 그 증서를 봉함하고 증서에 사용된 인장으로 이를 봉인할 것

3호 유언자가 공증인 1인 및 증인 2인 이상의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란 취지 및 그 필자의 성명 및 주소를 진술할 것

4호 공증인이 그 증서를 제출한 날짜 및 유언자의 진술을 봉함지에 기재한 후,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할 것

2 제968조 제3항의 규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준용한다.

(방식에 결함이 있는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제9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조에 정한 방식에 결함 있는 것이 있더라도 제968조에 정한 방식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비밀증서유언의 방식의 특칙)

제972조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의 앞에서 그 증서는 자기의 유언서라는 취지 및 그 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진술하거나 봉함지에 자서해서 제970조 제1항 제3호의 진술에 대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유언자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진술한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함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유언자가 봉함지에 자서한 때에는 공증인은 그 취지를 봉함지에 기재하여 제9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진술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

(성년피후견인의 유언)

제973조 성년피후견인이 사리를 식별할 능력을 일시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함에는 의사 2인 이상의 입회가 있어야 한다.

2 유언에 입회한 의사는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때에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사리를 식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에는 그 봉함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제974조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유언의 증인 또는 입회인이 될 수 없다.

1호 미성년자

2호 추정상속인 및 수증자 및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호 공증인의 배우자, 4촌 등 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
(공동유언의 금지)

제975조 유언은 2인 이상의 자가 동일한 증서에 할 수 없다.

제2관 특별 방식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의 유언)

제976조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가 유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인 3인 이상의 입회하에, 그 1인에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각 증인이 그 필기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말을 할 수 없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진술하고, 같은 항의 구술에 대신하여야 한다.

3 제1항 후단의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의 구술 또는 진술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규정하는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그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에 전달하여, 같은 항 후단의 읽어주기를 대신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유언은 유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인 1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가정재판소는 전항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로 표출된 것인지의 심증을 얻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제977조 전염병 때문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교통이 단절된 장소에 소재하는 자는 경찰관 1인 및 증인 1인 이상이 입회하여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박에 있는 자의 유언)

제978조 선박 중에 있는 자는 선장 또는 사무원 1인 및 증인 2인 이상이 입회하여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박조난자의 유언)

제979조 선박이 조난된 경우, 해당 선박 중에 있어 사망의 위급에 임박한 자는 증인 2인 이상이 입회하여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

2 말할 수 없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유언은 증인이 그 취지를 필기하여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고, 또한 증인 1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체없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제976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제980조 제977조 및 제978조의 경우에는 유언자, 필자, 입회인 및 증인은 각자 유언서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불능인 경우)

제981조 제977조부터 제979조까지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입회인 또는 증인은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규정의 준용)

제982조 제968조 제3항 및 제973조부터 제975조까지의 규정은 제976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언에 준용한다.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제983조 제976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보통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간 생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외국에 존재하는 일본인의 유언의 방식)

제984조 일본의 영사가 주재하는 지역에 있는 일본인이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증인의 직무는 영사가 행한다.

제3절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의 발생시기)

제985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유언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유증의 포기)

제986조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라도 유증의 포기를 할 수 있다.

2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제987조 유증의무자 (유증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 기타 이해관계인은 수증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유자가 그 기간 내에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제988조 수유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제989조 유증의 승인 및 포기는 철회할 수 없다.

2 제9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준용한다.

(포괄수증자의 권리의무)

제990조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제991조 수유자는 유증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동안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의 유증에 있어서 그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이와 같다.

(수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제992조 수유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제993조 제299조의 규정은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의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준용한다.

2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의 가격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제994조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정지조건부의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그 조건의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의 경우의 재산의 귀속)

제995조 유증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때 또는 포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했던 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제996조 유증은 그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의 시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 전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2 전항의 경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때 또는 이를 취득하는데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증 의무자의 인도의무)

제998조 유증의무자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를 상속개시 시(그 후에 해당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유증의 목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때)의 상태로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증의 물상대위)

제999조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 또는 변조 또는 그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화한 경우, 유언자가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물 또는 혼화물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0조 삭제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

제1001조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또한 그 받은 물건이 여전히 상속재산 중에 존재하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증여)

제1002조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는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수유자가 유증의 포기한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부담부유증의 수증자의 면책)

제1003조 부담부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유류분 회복의 소에 의하여 감소한 때에는 수유자는 그 감소의 비율에 따라 그 부담한 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4절 유언의 집행

(유언서의 검인)

제1004조 유언서의 보관자는 상속의 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언서의 보관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서를 발견한 후에도 이와 같다.

2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봉인이 있는 유언서는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없으면 개봉할 수 없다.

(과료)

제100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서를 제출함을 해태하여 그 검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언을 집행하거나 가정재판소 외에서 개봉을 한 자는 5만 엔 이하의 과

료에 처한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06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하고 이를 상속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상속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의 개시)

제1007조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즉시 그 임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유언집행자는 그 임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언의 내용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제1008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취임을 승낙하는지를 확답하여야 할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기간 내에 상속인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09조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10조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또는 될 수 없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

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목록의 작성)

제1011조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속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입회하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인에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012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2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증의 이행은 유언집행자만이 할 수 있다.

3 제644조, 제645조부터 제647조까지 및 제650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유언집행의 방해행위 금지)

제1013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처분 그 밖의 유언의 집행을 방해할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전2항의 규정은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를 포함한다)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제1014조 전3조의 규정은 유언이 상속재산 중에 특정한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유산분할 방법의 지정으로서 유산에 속하는 특정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승계시키는 취지의 유언(이하 "특정재산승계유언"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제89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재산이 예저금채권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외에, 그 예금 또는 저금의 반환청구 및 그 예금 또는 저금과 관련된 계약의 해약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약신청에 대해서는 그 예저금채권의 전부가 특정재산승계유언의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4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

제1015조 유언집행자가 그 권한 내에서 유언집행자임을 표시하여 한 행위는 상속인에 대하여 직접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집행자의 복임권)

제1016조 유언집행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2 전항 본문의 경우에 제3자에게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유언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임무의 집행)

제1017조 유언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2 각 유언집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018조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에 따라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4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648조의2의 규정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제1019조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해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2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

(위임의 규정의 준용)

제1020조 제654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준용한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제1021조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유류분을 감소하게 할 수 없다.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언의 철회)

제102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에 따라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과의 저촉 등)

제1023조 앞의 유언이 뒤의 유언과 저촉하는 때에는 그 저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규정은 유언이 유언 후의 생전처분 그 밖의 법률행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유언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의 파기)

제1024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한 때에는 그 파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기한 때에도 이와 같다.

(철회된 유언의 효력)

제1025조 전3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된 유언은 그 철회행위가 철회, 취소되거나 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효력을 회복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언의 철회권의 포기의 금지)

제1026조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부담부 유증에 관련한 유언의 취소)

제1027조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담부 유증과 관련된 유언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배우자의 주거 권리

제1절 배우자 거주권

(배우자 거주권)

제1028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장에서 간단히 "배우자"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건물에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하 이 절에서 "거주건물"이라 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을 취할 권리(이하 이 장에서 "배우자 거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거주건물을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2호 배우자 거주권이 유증의 목적이 되었을 때.

2 거주건물이 배우자의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자가 그 공유지분을 가진 때에는 배우자 거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제903조제4항의 규정은 배우자 거주권의 유증에 대하여 준용한다.

(심판에 의한 배우자 거주권 취득)

제1029조 유산분할 청구를 받은 가정재판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다.

1호 공동상속인간에게 배우자가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호 배우자가 가정재판소에 배우자 거주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취지를 신청한 경우, 거주건물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계속 배우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전호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배우자 거주권의 존속기간)

제1030조 배우자 거주권의 존속기간은 배우자의 종신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유산분할의 협의 또는 유언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 또는 가정재판소가 유산분할의 심판에서 별도의 정함을 한 때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우자 거주권의 등기 등)

제1031조 거주건물의 소유자는 배우자(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한 배우자에 한한다. 이하 본 절에서 동일)에 대하여 배우자 거주권의 설정 등기를 갖추게 할 의무를 진다.

2 제605조의 규정은 배우자 거주권에 대하여, 제605조의4의 규정은 배우자 거주권 설정의 등기를 갖춘 경우에 준용한다.

(배우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제1032조 배우자는 종전의 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거주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전 거주용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거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3 배우자는 거주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거주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제3자에게 거주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을 취하게 할 수 없다.

4 배우자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거주건물의 소유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거주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배우자 거주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거주건물의 수선 등)

제1033조 배우자는 거주 건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있다.

2 거주건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을 경우 거주건물의 소유자는 그 수선을 할 수 있다.

3 거주건물이 수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스스로 그 수선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 또는 거주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거주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건물의 비용의 부담)

제1034조 배우자는 거주건물의 통상적인 필요비를 부담한다.

2 제58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상적인 필요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 준용한다.

(거주건물의 반환 등)

제1035조 배우자는 배우자 거주권이 소멸한 때에는 거주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거주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건물의 소유자는 배우자 거주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거주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제59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21조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 개시 후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거주건물이나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손상이 있는 거주건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사용대차 및 임대차 규정의 준용)

제1036조 제597조제1항 및 제3항, 제600조, 제613조, 제616조의2의 규정은 배우자 거주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배우자 단기거주권

(배우자 단기거주권)

제1037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건물에 상속개시 시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거주하고 있던 건물(이하 이 절에서 "거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절에서 "거주건물 취득자"라 한다)에게 거주건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거주건물의 일부만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 이하 이 절에서 "배우자 단기거주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건물과 관련된 배우자거주권을 취득한 때 또는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거주건물에 대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간이 유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경우 유산의 분할에 의하여 거주건물의 귀속이 확정된 날 또는 상속개시 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 늦은 날

2호 전호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 제3항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2 전항 본문의 경우 거주건물 취득자는 제3자에 대한 거주건물의 양도 및 기타 방법으로 배우자의 거주건물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거주건물취득자는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배우자 단기거주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에 의한 사용)

제1038조 배우자(배우자 단기거주권이 있는 배우자에 한한다. 이하 본 절에서 동일)은 종전의 용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거주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2 배우자는 거주건물 취득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제3자에게 거주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 배우자가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거주건물 취득자는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배우자 단기거주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배우자 거주권에 취득에 의한 배우자 단기거주권의 소멸)

제1039조 배우자가 거주건물과 관련된 배우자 거주권을 취득한 때에는 배우자 단기거주권은 소멸한다.

(거주건물의 반환 등)

제1040조 배우자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단기거주권이 소멸한 때에는 거주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거주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건물 취득자는 배우자 단기거주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거주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제59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21조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 개시 후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거주건물이나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손상이 있는 거주건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사용대차 등의 규정의 준용)

제1041조 제597조제3항, 제600조, 제616조의2, 제1032조제2항, 제133조 및 제1034조의 규정은 배우자단기거주권에 준용한다.

제9장 유류분

(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제1042조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1호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3분의1

2호 전호에 열거한 경우 이외의 경우 2분의1

2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전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은 이에 제900조 및 제

90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그 각자의 상속분을 곱한 비율로 한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

제1043조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한다.

제1044조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에 한하여 전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입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의 날보다 전에 한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2 제904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항 중 "1년"은 "10년"으로, "가액"은 "가액(훈인이나 입양을 위해 또는 생계의 자본으로 받은 증여의 가액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045조 부담부증여가 된 경우에 제104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그 목적의 가액에서 부담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부당한 대가로 행한 유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에 한하여 당해 대가를 부담의 가액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 본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

제1046조 유류분 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수유자(특정재산승계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하거나 상속분의 지정을 받은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본 장에서 동일)

또는 수증자에 대해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침해액은 제1042조의 규정에 따른 유류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제3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호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유증 또는 제903조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 가액

2호 제900조 내지 제902조, 제903조 및 제90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취득해야 할 유산의 가액

3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채무 중 제899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승계하는 채무(다음 조 제3항에서 '유류분 권리자 승계채무') 금액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부담액)

제1047조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특정재산승계유언에 의한 재산의 승계 또는 상속분의 지정에 의한 유산의 취득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동일) 또는 증여(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목적의 가액(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액에서 제1042조의 규정에 따른 유류분으로서 해당 상속인이 받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유류분 침해액을 부담한다.

1호 수유자와 수증자가 있는 때에는 수유자가 먼저 부담한다.

2호 수유자가 복수인 때 또는 수증자가 복수인 경우에 그 증여가 동시에 된 것인 때에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그 목적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3호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후 증여와 관련된 수증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전 증여와 관련된 수증자가 부담한다.

2 제904조, 제1043조제2항 및 제1045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된 유증 또는 증여 목적의 가액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전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유류분 권리자 승계채무에 대하여 변제 기타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멸한 채무액의 한도에

서 유류분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이 경우, 해당 행위에 의하여 유류분 권리자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은 소멸한 해당 채무액의 한도에서 소멸한다.

4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유류분 권리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5 법원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해 상당한 기한을 허여할 수 있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권 기간제한)

제1048조 유류분침해액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유류분의 포기)

제1049조 상속의 개시 전에 유류분의 포기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사람이 한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장 특별기여

제1050조 피상속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요양간호 및 기타 노무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피상속인의 친족(상속인, 상속의 포기를 한 자 및 제89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폐제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상실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별기여자"라 한다.)는 상속의 개시 후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자의 기여에 따른 금액의 금전(이하 이

조에서 "특별기여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료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기여자는 가정재판소에 협의를 대신하는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기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상속인을 안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상속개시 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 본문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기여료의 액수를 정한다.

4 특별기여료의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넘을 수 없다.

5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특별기여료의 금액에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상속인의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끝-